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23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민간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는 인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체계화·전문성을 확보하고,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인권은 비교적 최근에 행정에 도입된 분야로서, 그 동안 담당 공무원에 의해 용역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인권교육의 경우 전문성 부족, 경험 축적 단절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원활한 인권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다. 이에, 인권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인권교육과 시민사회 지원·협력사업 사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실시 결과 (서울시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서울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 :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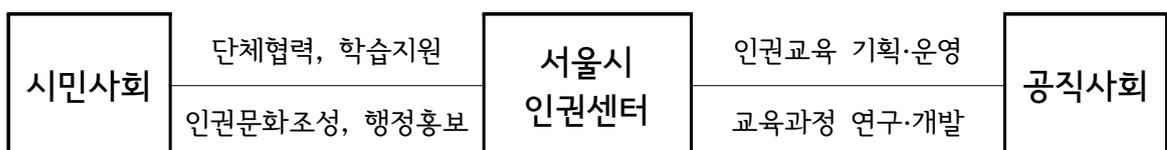
-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 전문성 활용한 서울시 인권교육 체계화
- 민간주체를 매개로 하여 인권행정 추진에 시민사회와의 협치 활성화

다. 위탁사무 내용

1) 센터 역할

-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중상시 운영함
-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인권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인권단체 지원·협력 등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행정 홍보 역할을 통해 서울시 인권 협치를 강화함

2) 센터 기능



3) 주요 위탁사무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통합/일반 과정 기획 및 운영
 - 통합과정(4시간, 총15회) : 본청 11개 실·국 및 1개 사업소 1,797명 대상
 - 일반과정(2시간, 총190회) : 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22,383명 대상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개발
 -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활용
 - 강의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제작, 활용 및 배포
- 인권교육 강사진 관리
 - 양질의 강사 명단 관리 및 교육과정 투입
 - 기관 자체교육 강사 추천 요청 시 연계 활용
- 인권 관련 자료 수집, 보존, 연구 등
 - 교재·과정 연구, 시민 학습 지원 등을 위한 인권 자료 아카이브 구축

〈시민사회 지원·협력 사업 운영〉

- 지역사회 인권단체 지원 및 협력
 -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등 협치와 소통을 위한 창구 운영
 - 회의·교육장소 유희공간 대관
- 시민 학습 지원
 - 시민 대상 인권 강좌 프로그램 개설·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권 자료 제공 (다운로드, 열람 등)
- 시민사회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행정 홍보
 - 대시민 권리 인식 캠페인 등 기획 및 실시
 - 시민 참여형 인권문화행사 개최
-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방문·전화 시 간이상담 후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안내
 - 서울시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절차 안내
 - 필요시 인권무료법률 상담 연계

라.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3층(후보지)

2) 규모 : 전용면적 기준 264㎡ 내외 (사무공간 99㎡, 교육공간 165㎡)

3) 공간배치

- 시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확보하여 우선 교육 관련 핵심기능(사무공간, 교육공간) 위주로 구성
- 인권교육 과정 위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추후 인권단체 활동 공간, 전시공간 등을 포함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 확대
- 장기적으로는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서울시 내부 조직과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민-관 통합형 인권센터 설치방안 검토

4)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18. 5. ~ '21. 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인권, 인권교육 분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864,150천원(2018년)

- 산출근거

구분	금액	내역	비고
총계	864,150천원		
인건비	160,000천원	- 기본급, 제수당 및 퇴직충당금	
운영비	361,900천원	-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 사무용품, 집기류, 기타소모품 등	
사업비	342,250천원	- 서울 인권아카데미 · 통합과정 : 64,000천원 · 일반과정 : 187,250천원 - 교육콘텐츠 개발 : 50,000천원 - 시민사회 지원협력 : 41,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 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1) 인권센터 관련 연구용역 실시 결과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2015.11.)

- 지속적 인권교육 성장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센터 설립 제안

- 운영 불안정성 등을 내부 약점으로 꼽고 안정적 전개방안 마련 등 제안
 - 내부 약점 : 운영 불안정성, 안정적 교육 공간 미비 등
 - 안정적 전개방안 : 계약 운영방식 개선, 관리 운영 위탁화, 인권교육센터 설립 등
- 협력적 인권교육 운영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지속적 인권교육 성장 시스템 구축

	현 체계 보완	독립 인권센터 설립	인권교육센터
운영주체	· 인권담당관	· 인권거버넌스(인권교육위원회)	· 인권교육거버넌스
장점		· 인권행정기반 인권교육 연계 진행 · 인권교육의 성과 평가 용이	· 인권교육 전문성 확보 용이
단점 (주의점)	· 전문성 축적 어려움 · 짧은 근무기간	· 재원부담	· 재원부담: 독자적 업무 공간 및 인력 확보
보완사항	· 담당 인력 확충 · 전문관 제도 도입 · 인권교육전문단체(전문가) 연계 강화	· 시민/시민단체와의 관계 강화 · 서울시 인권 관련 민간 거버넌스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서울시 행정과의 협력 강화	· 인권교육센터 근거(조례안) 확보 ·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 (2016.8.)

- 인권교육센터 구성, 인권교육전담기능 구현 등 제시

- 인권제도 개선방안으로 인권재단 설립 등 인권교육 전담기능 구현 제시
 - 인권교육프로그램, 교재 및 강의안 제작, 강사진 양성 및 운영 등 인권 정책 연구 및 인권교육 총괄 업무 담당
 - 시민사회 인권활동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활동 경험 활용
 - 공무원 인권교육 현장성을 위해 인권전담부서와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 인권교육 보완 필요성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문제점 : 1년 단위 용역으로 불안정한 시스템,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의 단절성 및 전문성 약화 등
 - 보완 필요성 : 인권교육의 지속성 및 양질의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이 필요
 - 인권교육센터 설치, 인권교육팀 신설, 다년계약 체결 등 개선방안 제안
 - 독립적 인권교육센터 설치 : 근거 규범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권교육이 인권행정과 분리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필요

2) 인권센터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 결과

- '17. 7. 7. : 제4차 서울시 인권위원회 교육협력 소위원회

· 인권교육 개선방안 논의 (인권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 문제점 : 업체 선정에 시일 소요, 잦은 업체 변경, 교육장소 확보 곤란 등

○ 주요 논의내용

- 계약절차 개선,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장단점 검토가 필요함

- '16. 9월 조례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되었으므로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 위탁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연수 시 안건 준비 요망

- '17. 7. 11. : 서울시 인권위원회 공동연수

· 인권센터 설치 후 인권교육, 단체지원 업무 등 위탁 운영 의견 제시

○ 문제점 : 교육내용 축적, 강사풀 관리 등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공유함

○ 주요 논의내용

- 인권위원회에서는 센터가 필요하고, 담당 기능은 교육과 협력이라고 봄

- 장기적으로 '인권'이 서울이라는 지자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야 함

- 민간위탁 시 사업추진의 단절성을 제거하여 연속적 안정적 교육 추진 가능함

※ 작성자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조병훈 (☎ 2133-6386)